## [통영] 2024년 1차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통계청 통영사무소에서는 직원 결원에 따른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4. 4. 11. 통계청 통영사무소

##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

지역	계약방법	채용구분	채용인원	채용기간	수당
통영	근로 계약	기간제근로자	1명	<b>'</b> 24.5.1.~7.31.	1일 70,370원 (표본관리비, 식비 별도 지급)

<sup>※</sup> 기관의 사정에 따라 채용인원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, 부서내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

## 2 담당업무

담당업무	주요 담당업무
어업부문 경상조사 등	<ul> <li>○ 어업부문 경상조사, 연간 및 특별조사</li> <li>○ 조사대상처 관리 및 조사업무</li> <li>○ 현장(방문)조사 및 조사표 작성</li> <li>○ 조사표류 입력, 내용검토 및 보완 등</li> <li>○ 그 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업무</li> </ul>

<sup>※</sup> 기관의 사정에 따라 주요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.

### 3 선발방법

#### □ 1차 전형

- 직무수행에 관련하여 응모자의 모집 제한 여부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- 자기소개서 내용 등을 평가하여 1차 전형 합격자 선정
  - ※ 자기소개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미비로 평가대상에서 제외
  - ※ 면접 미참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
#### □ 2차 전형

- O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후 최종합격자 선정
-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,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
#### □ 최종합격자 선정기준

- O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
- O 면접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- O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
#### □ 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 대상자) 가점

- O 1차, 2차 전형에 각각 적용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「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5조,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가점 부여

5점	10점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	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
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	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
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	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
- 애국지사의 가족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 망한 경우 그유족,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	<ul> <li>-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, 애국지사가 등록 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</li> <li>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,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</li> </ul>
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	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	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
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	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
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	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
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	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
희생자의 배우자	희생자
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	- 5·18민주화운동 시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
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	자녀

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, 제24조 및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

5점	10점
<ul> <li>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</li> <li>특수임무부상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</li> <li>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</li> <li>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</li> </ul>	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※ 국가유공자법 제31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(「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 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 4 응시 자격요건(모두 충족)

□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□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
□ 「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(해당자에 한함)
□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 우대(해당자에 한함)
※ 저소득층의 범위: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제2호・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
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
※ 다자녀보육가구: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
※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
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」 및 「5·18민주유공자
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점 부여
□ 「통계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
않는자(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(「국가공무원법 제33조」 및 「부패방지 및
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),
기타 관련법령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
□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
□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

- □ 채용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 자□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
  - 5 **전형일정**
- □ 채용공고: 2024.4.11.(목)~2024.4.17.(수) 18:00
- 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4.4.19.(금) 14:00
- □ 면접일시 및 장소: 2024.4.22(월) 13:30~, 통계청 통영사무소
- □ 최종합격자 발표: 2024.4.26.(금) 14:00
  -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(http://kostat.go.kr) 채용정보에 공고
    - ※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### 6 지원서 접수

- □ 접수기간: 2024.4.11.(목)~2024.4.17.(수) 18시까지
- □ 접수방법
  - 방문접수: 평일 09:00~18:00 (토, 일, 공휴일 제외)
  - O 우편 및 이메일 접수 :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  - Fax를 통한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함
  -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
- □ 접수처

기 관 명	담당자	주 소	연 락 처
통계청	문지현	경남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355	전화: 055-640-0713
통영사무소		2층 경제사회통계팀	이메일: jihyeon1208@korea.kr

### 7 | 제출서류

- □ [필수] 응시원서 1부
- □ [필수] 자기소개서 1부
- □ [필수]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1부
- □ [필수]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
□ [해당자] 행정정보 공용이용 사전동의서 1부
□ [해당자] 자격증명서 1부
□ [해당자]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□ [해당자]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
지원에 관한 법률 및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
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탈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(장애인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기술자격증,
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) 제외
※ 필요 시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 추가 가능
<ul><li>※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, 반환 청구 시에는</li><li>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반환(단,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)</li></ul>
8 유의사항
□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
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□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□ 겸업 및 이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
□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·결정을 거쳐
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□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
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
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 지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
□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
<ul><li>□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</li><li>□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</li></ul>
□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 □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
□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 □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<ul> <li>□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</li> <li>□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</li> <li>□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,</li> </ul>
<ul> <li>□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</li> <li>□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</li> <li>□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,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</li> </ul>
<ul> <li>□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</li> <li>□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</li> <li>□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,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</li> <li>□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「채용</li> </ul>
<ul> <li>□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</li> <li>□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</li> <li>□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,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</li> </ul>

-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